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18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 김문수 · 허성무 · 이수진

박지원 • 박해철 • 강준현

정을호 · 고민정 · 문정복

양문석 • 이상식 • 염태영

김동아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·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 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 아지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임.

이에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0566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 11 및 제30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11(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) ①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(교실은 제외한다)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"폐쇄회로 텔레비전"이라 한다)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 보호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
- 2.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교직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학교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

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- 2.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 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
- 3.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
- ③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종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·절차·요건,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의12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30조의11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
  - 2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「아동

복지법」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
- 3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②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제30조의11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- 2.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 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
- ③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제30조의11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·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·점검하여야 한다.

-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30조의11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·변조·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제25조는 제외한다)을 적용한다.

제67조제1항 중 "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하거나 누설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 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0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·변조·훼손 또는 멸실한 자
- 2.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
- 5. 제30조의1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
- 6. 제30조의1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

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 장한 자

③ 제30조의12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6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30조의11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 치·관리의무를 위반한 자
- 2.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제30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0조의11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566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<u>&lt;신설&gt;</u>	변률 제20566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11(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) ①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(교실은 제외한다)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"폐쇄회로 텔레비전"이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보호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 2.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보호자 및 교직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받아 「개인정보보보호법」 및 관련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경우

-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학교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- 2.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.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
- ③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 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것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신 설>

<u>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</u>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종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·절차·요건,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12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0조의11제 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
- 2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

   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

   「아동복지법」 제66조 등 법

 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안전업

 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

 경우

- 3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경우
- ②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느 된다.
- 1. 제30조의11제1항의 설치 목 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- 2.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 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
- ③ 학교를 설립・경영하는 자

는 제30조의11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접속기록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학생 및 교직원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·관리 및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조사·점검하여야 한다.

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30조의11 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·변조·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

 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

 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

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

제67조(벌칙) ① 제60조의6제5항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 설>

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	<u> </u>				<u>-</u>	<u> </u>
적용	용한다.					
67 <i>2</i>	조(벌칙)	1	다음	각	호의	네 어
느	하나에	해대	당하는	<u>-</u>		
	572		67조(벌칙) ①	67조(벌칙) ① <u>다음</u>	67조(벌칙) ① <u>다음 각</u>	<u>적용한다.</u> 37조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</u> 으 느 하나에 해당하는

보호법 (제25조는 제외한다)읔

- 1. 제30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

   영상정보를 유출・변조・훼손

   또는 멸실한 자
- 2.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

(2)	 	 	 	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30조의12제2항제1호를 위
   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
 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
 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

<신 설>

<신 설>

③ • ④ (생 략)

제68조(과태료) <신 설>

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

- 6. 제30조의1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
- ③ 제30조의12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<u>④·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
- 제6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30조의11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설치·관리의무를 위반 한 자
  - 2.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

① (생 략)	<u>②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② $M1항에$ 따른 과태료는 대	③ 제1항 및 제2항에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해당 교육감이 부과 · 징수한다.	